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 주요골자

- 설치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 14-34번지
- 설치규모
 - 부지 면적 : 9,548㎡(2,888평)
 - 건축 면적 : 1,000㎡(302.5평)
 - 건축연면적 : 1,655㎡(500.6평) 지하 1층, 지상 2층
 - 추 정 가 액 : 30억원

3. 검토의견

이번 안건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전액(30억원) 지원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산 14-3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는 인접지역은 금호·풍암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체육인구 잠재수요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며, 금호·풍암지구와 더불어서 화정·영주지구가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다수 주민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도시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의 일부로서 주변산책로, 체육시설 등과 연계된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실내코트, 헬스장, 강의실, 체력측정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될 서구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은 인접지역의 '풍암쓰레기매립장'에 조성 예정인 생활체육공원 및 중앙공원 일대의 전문체육시설과 연계된 생활체육의 메카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될 것이며,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분포해 있어 주민접근이 용이하며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로 여가시간을 생활체육을 통해 건전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지방재정법 제77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기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재산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민의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이고 즉흥

적인 재산취득, 처분 등을 예방하면서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문제점은 제출시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부서는 정기분 관리계획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수시분 관리계획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는 이미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후에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